

청주지방법원 2019. 7. 4 선고 2019가단399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7. 4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천막즙 60m<sup>2</sup>(가건물) 및 같은 도면 표시 ㄴ, ㄷ, ㄹ,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천막즙 60m<sup>2</sup>(가건물)를 각 철거하고,  
나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,  
다. 2018. 10. 1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**판사강부영**

별지